



82th July 2015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WHERE IS GRACE CHANG?

Mea culpa (내 탓이요)

2

COVER STORY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 금융”,
“무역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3

VOICES FROM THE FIELDS

공공사업의 민영화 시
고려하여야 할 문제

6

FTA NEWS

한-중미 FTA 협상개시
및 기대효과

8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0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②

수입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기술서비스
수수료가 과세대상
인지 여부

12

TRADE NEWS

[글로벌 무역 동향]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 13 차 보고서'

14

신한 ISSUE

6 월 수출입 특수업무
기업 초청 교육

16

ABOUT

WRITERS



WHERE IS GRACE CHANG?

 **Mea culpa (내 탓이요)**



장승희
대표 관세사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중동호흡기증후군)가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7월 3일의 현황을 보면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015년 5월 4일 첫 환자의 입국부터 2달.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정부의 부실 대응이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습니다. 초기의 대응이 미흡하였다면 이 후 단계에서라도 신속하게 고쳐졌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질병을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긴 하나 질책하는 대중의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거나 알고 있는 것을 숨기는 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국민적 이슈에 대한 발표 시에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천주교에서는 몸과 마음에 체득시키기 위한 의식까지 도입하였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나이다...."**

that I have greatly sinned,
in my thoughts and in my words,
in what I have done and in what I have failed to do,
through my fault, through my fault,
Mea culpa, mea culpa, mea maxima culpa.

이번 달 Cover Story는 최근 문제가 되었던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금융" "무역보험"**에 대한 글입니다. "모뉴엘 사건"과 같은 무역금융사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TA News는 **중미 6개국과의 FTA 협상 시작**에 대한 기사입니다. Voices From The Fields는 **공공사업의 민영화에 따른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는 **기술서비스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글로벌 무역동향은 **G20 무역 및 투자조치 제 13차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덕을 갖춘 사람에게는 반드시 덕이 있는 사람이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德不孤 必有隣 (덕불고 필유린)*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오만한 사람에게는 덕이 쌓일 수 없습니다. **덕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따를 수 없습니다.**

매스컴을 보며 분개하기 전에 저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지난 한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잘못을 반성합니다. 했어야 하는 데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떠올립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달 7월에 행복하시고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논어(論語)』 이인편(里仁篇)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Cover
Story**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금융”, “무역보험” 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무역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무역금융”, “무역보험”이라는 단어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많은 분들이 무역금융, 무역보험제도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역과 관련된 혜택이겠구나 라고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고 정확히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서, 이번 cover story에서는 무역금융, 무역보험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해서 최근 issue 가 있었던 “무역금융사기대출”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도에 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역금융, 보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I. 무역금융의 개념

무역금융이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대출, 관련 지급보증제도를 말합니다. 무역금융은 한국수출입은행 / 외국환업무 취급은행(외국환은행) / 기업은행 /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제공하며, 크게 선적 전 금융과 선적 후 금융으로 대별됩니다.

선적 전 금융

선적 전 금융은 수출상이 수출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는 금융이며 일반수출입금융이라고 명칭하기도 합니다. 수출상은 신용장 건별 또는 과거 수출실적의 한도내에서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원자재의 확보에서 물품의 선적에 이르기

까지 소요되는 제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의 용도는 생산자금, 원자재(구매)자금, 완제품구매자금 용자, 포괄금융 등으로 구분됩니다.

선적 후 금융

선적 후 금융이란 수출상의 물품 선적에 따른 외상수출채권(수출환어음)을 외국환은행 등에 할인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환어음이 발행되는 거래의 경우 환어음매입, 수출팩토링, 포페이팅(Forfaiting)등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II. 수출보험

수출보험이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을 말합니다.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으로부터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써,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서 제공합니다.

수출신용보증보험

수출보험의 한 종류로서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자가 외상으로 수출한 후 환어음 등의 선적 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대전을 미리 지급받으면(무역금융 - 선적 후 금융)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반해, 외국환 은행은 자기자금으로 매입대전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게 되며, 한국무역 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가 이런 담보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매입대전을 선지급 하였으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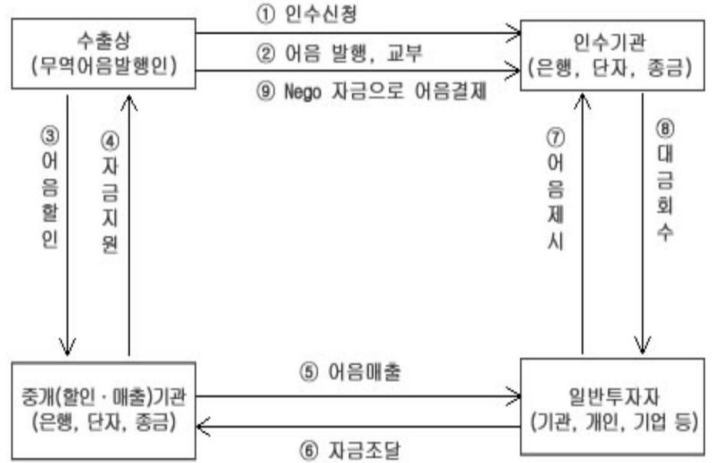
Ⅲ. 무역금융사기(모뉴엘 사건 등)

"모뉴엘 사건"

작년 10 월 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모뉴엘"이라는 중견기업이 2009 년부터 2014 년 7 월까지 3,000 여 차례에 걸쳐 홈시어터피시(HTPC) 반제품 120 만대를 대당 250 만원 정도에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런 허위 수출채권을 바탕으로 국내 시중 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10 여개 금융회사에서 5 년여 동안 3 조 2000 억원을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결과를 밝혔습니다.

"모뉴엘"은 가짜 수출채권(국내 거래가격 1~2 만원 짜리의 폐 물품을 250 만원 상당의 수출품으로 수출 금액 과대신고)을 근거로 수출환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국내 금융권에 매각해 수출대금을 미리 받는 형식으로 사기대출을 받고(무역금융 악용), 어음 결제 만기가 돌아오면 새롭게 꾸며낸 수출채권으로 또다시 사기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빼돌려 왔습니다.

또한 모뉴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모뉴엘의 사기대출로 인해 국내 금융사가 이미 지불하고 회수가 되지 않는



[무역어음 할인 절차(선적후 무역금융)]



[수출신용보증(수출보험) 구조]

무역대금 피해액에 대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역보험 악용)

무역금융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모뉴엘 사건"과 같은 무역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심사와 관련한 각종 서류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심사자와 심사 신청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착, 청탁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하는 등 심사행위, 심사조직에 대한 관리·보완이 필요하며, 사기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처음부터 사기의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제도적 개선 이외에 수출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수출자, 이를 심사하는 심사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무역금융제도, 무역보험제도와 이와 관련된 악용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출거래의 준비단계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또는 물품 선적 이후에 대금 수취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또는 수입자의 신용이 의심스러운 거래에 직면하신 분이 계시다면, 소개해드린 무역금융, 무역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분야에서 좋은 해결책을 얻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무역금융, 무역보험 제도의 활용을 통해 여러분의 수출이 더욱 증가되시길 기원합니다~! ^^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중 호

jhshin@customsservice.co.kr

관련 site

무역보험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sure.or.kr/index.jsp

무역금융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內 무역실무메뉴얼,

www.kita.net/trade/business_manual/manual07/a0101.jsp

Voices From The Fields

공공사업의 민영화 시 고려하여야 할 문제

전세계적인 공공사업의 민영화 추세에 힘입어 “민영화”는 뜨거운 찬반여론을 일으키며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논쟁거리의 주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말이 많은 민영화란 과연 무엇일까? 민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 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민영화가 추진되는 배경은 각 나라별, 시대별로 조금씩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추진 배경은 공공기관의 비대화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성 개선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효율성은 곧 수익성 창출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기 마련이다. 공공기관의 제 1의 목적이 ‘공익성’ 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민영화로 인한 수익성 창출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인천공항 위험물 터미널 운영업자 변경과 이에 따른 통관 현장에서의 해프닝

공공사업의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일례로 실제 내가 근무중인 인천공항 통관현장에서 접했던 사례를 들 수 있겠다. 이는 불과 몇 달 전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위험물터미널 운영을 민간임대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불거지게 된 문제인데, 2015 년 5 월 1 일부로 위험물터미널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S”창고의 위험물 반입거부에 따라 초래된 물류흐름에의 심각한 혼란이 바로 그것이다. 즉, 인천공항의 유일한 위험물 취급창고인 “S”창고에서 위험물에 대한 반입거부를 함에 따라 인천공항으로 입항한 물품을 다시 김포공항으로 보세운송을 한 후에 통관을 하여야 함은 물론, 이미 인천공항세관으로 수입신고 접수가 된 건(반입 전 신고 건)은 심지어 신고 취하 절차를 거쳐 김포세관으로 새로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심각한 절차상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이에 통관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항공사, 포워딩, 관세사 및 운송업체 등 물류업계 전반에서는 업무처리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손실 또한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관실무상의 어려움에 각 항공사들은 임시방편으로 창고 반입이 필요하지 않은 "PREC 또는 PRET(세관 사전신고 제도)"의 적극 활용을 유도하였고, 현재는 "S"창고에서 위험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의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해당 사안은 막을 내린 상황이다. 항공사와 해당 창고 간의 속사정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와 같은 사례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처럼 공공 성격의 시설물의 민간임대로 인해 운영서비스가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적인 목소리는 기우(杞憂)가 아니었던 듯 하다.

"수익성" 보다는 공공기관의 본래의 목적인 "공익성"을 우선시 해야

본 사례에서는 사업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공공기관의 민간부문 입찰행위에서 발생하는 공익성의 침해를 지적할 수 있겠다. 공공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등은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창고 등 공익성이 큰 사업분야에 대하여는 더욱더 입찰 시에 공익성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해당 사례 외에도 공공기관의 제 1 의 목적인 공익성 상실의 예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한 공공기관에서 최근 리모델링을 사업을 시행하는데 공익성이 큰 창고 등 관련 기관사업은 제쳐두고 공익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주차장 건립에만 집중하는 모습 등은 그야말로

공공기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 나오고 있는 실정 이니 말이다.

무분별한 민영화는 지양, 민영화에 앞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

공공사업의 민영화에 따라 공익성과 수익성이 공존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1. 해당 공기업이 속한 시장 등 상황을 분석하여 공기업 민영화가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최초의 공적 기능이 현상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민영화의 목표를 단순 수익성 증대에 두기 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고려하여 각 부분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소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무분별한 민영화를 지양하여야 하겠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박 소 라

srpark@customsservice.co.kr

한-중미 FTA 협상개시 및 기대효과

1. 개요

지난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미국에서 중미 6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과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2014년 현재 중남미에서 GDP 기준(약 2,100억불) 5위, 인구기준(4,350만명) 3위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며, 우리나라의 200여개 기업이 현지 투자 및 진출하여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미 6개국 경제규모

구분	GDP(억불)	1인당 GDP(불)	인구(백만명)
과테말라	582.9	3,673.50	14.6
엘살바도르	251.4	3,958.40	6.1
온두라스	193.7	2,344.10	8.6
니카라과	118.4	1,903.90	5.8
코스타리카	504.6	10,568.40	4.8
중미공동시장 CACM (5개국)	1,651	3987.9	39.9
파나마	446.9	11,799.50	3.6
SIECA(6개국)	2,097.90	4643.4	43.5
중남미	57325	9513.2	602.58

<출처: GDP, 1인당 GDP(IMF), 인구 (CIA, The World Factbook)>

2. 기대효과

(1) 상호보완적 시장 구조

양국의 수출품목을 고려할 때,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전자, 섬유 등의 공업생산품인 반면, 중미의 주요 수출품목은 커피, 열대과일, 금속 등 자연자원이다.

이처럼 산업구조가 경쟁적인 양상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갖고 있어 협정 체결 시 상호 윈윈이 가능할 전망이다.

(2) 시장선점 가능성

현재 중미 주요국 전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는 전무하다. 물론 중국-코스타리카, 파나마-대만 등 개별 국가와 체결한 협정은 존재 하지만 중미 주요국 전체를 대상으로 체결하려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해당 FTA 가 타결될

경우, 중국, 일본 등 자동차 및 전자 부문의 경쟁 국에 앞서 중미 시장을 선점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미주 및 유럽진출의 교두보 확보

중미 6 개국은 지정학적으로 북미와 남미를 연결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 멕시코는 물론 EU 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FTA 를 전략적 으로 활용할 경우 미주와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중미 6개국간 교역규모 추이

(단위 : 천불)

국가별	2004		2005		2013		2014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코스타리카	122,374	28,591	164,032	35,124	232,059	267,247	242,541	290,797
과테말라	550,065	62,123	498,986	83,296	394,514	159,575	319,568	320,690
온두라스	143,890	15,390	119,650	22,317	124,048	54,172	114,904	51,055
니카라과	117,092	3,926	129,840	1,424	188,318	24,016	182,230	21,699
파나마	1,263,797	293,866	1,622,651	247,921	3,484,594	516,357	2,764,664	495,355
엘살바도르	68,517	3,014	73,795	3,238	152,740	17,116	139,444	57,839
계	2,265,735	406,910	2,608,954	393,320	4,576,273	1,038,483	3,763,351	1,237,435

<출처 : 통계청>

3. 향후 전망

한국과 중미 6 개국간 교역규모는 50 억불 수준에 불과하여 그리 큰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10 년간 2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그동안 공적개발원조,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통해 전개된 중미지역 상수도, 전력망, 태양광 등 다양한 개발 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상생형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교역 및 투자가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교역과 투자가 정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한-중미 6 개국의 상생형 FTA 협상이 체결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교역 품목과 투자 분야를 다변화하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동 현

leedh@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자유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사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수정통보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절차를 정비하며,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당(原糖)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절차 간소화(제12조)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수정된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개선(제15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먼저 서면조사를 하고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협정관세율표의 정비 등(별표 3의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태국이 원당에 대한 관세율을 0(零)퍼센트로 인하함에 따라,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당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0퍼센트)을 적용함.

3. 시행일자

2015년 6월 5일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사유

- 고시 내용 중 내부절차 사항을 분리하여 훈령으로 규정하고, 고시명을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개정
-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른 국무총리실 규제개선과제 건의사항을 고시에 반영
- 「세관환급금 환급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및 지침에서 운영하던 민원사항을 고시에 상향 반영
- 조문 일제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을 적용한 용어순화 등 문구 수정

2. 주요 개정내용

- [1] 조문 일제정비(전문개정) 및 문구수정(「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적용)
 - 가지형태 조문을 연번 조문 형식으로 전환하고 문장정비, 용어정비,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개정
- [2] 양수인의 환급신청서류 명확화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제22조)
 - 환급 양수자가 환급신청 시 환급신청서류에 환급금 양도 신청서 추가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가 도입되어 환급신청 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3] 환급충당 신청 및 통지 서식 고시 반영(제23조)
 - 환급충당 신청·통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

련 서식(세관환급금 환급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고시로 규정

[4]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절차 마련(제45조)

-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
- 세관장은 심사개시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심사대상자에게 통지

[5] '관세조사 결과'와 '과세전통지'를 구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제46조)

- 법 제118조에서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에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조사 결과 통지와 구분하여 별도로과세전통지하도록 규정(국무총리실 규제개선과제 개선의견)

[6]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 절차 마련(제49조)

- 관세법 제38조의2 및 제42조에 따라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면제 신청서를 제출
- 세관장은 20일 이내 면제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명으로 통지

3. 시행일자

2015년 6월 3일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

수입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기술서비스수수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I. 쟁점

원고회사는 네트워크 통신기기 및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하고, 판매 이후에도 쟁점물품을 유지, 보수하여 주는 것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국내 최종 사용자에게 이러한 유지정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수출자의 기술지원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자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수입계약에 부수한 별도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 지급한 기술지원 서비스 수수료가 관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쟁점사항이다.

II.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 외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

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⑥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III. 사실관계

(1) 원고회사는 쟁점물품을 시스템 통합사업자 판매 방식에 따라 수입하였다.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에는 시스템 통합사업자(System Integrator) 방식과 유통판매 대리점인 디스트리 뷰터(Distributor) 방식이 있다. 2개 방식의 차이점은 수출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기술지원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스템 통합사업자를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수행하느냐에 있다.

(2) 원고회사는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수출자측 엔지니어의 파견 등의 지원 및 소프트웨어 지원(개정판 업그레이드 제공, 결함(버그) 제

거, 문제 해결을 위한 패치 프로그램 등의 지원 등)과 하드웨어 지원(고장 난 제품이 수리되기 전에 새 제품을 우선 공급해 주는 선교체 후수리 등)의 기술지원을 받는다.

(3) 원고회사는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대가를 수입 물품 가격에 대한 일정비율로 계산한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IV. 판결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 수수료는 하자보증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 수수료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거래조건인가를 살펴보면, 원고회사는 시스템 통합사업자 방식이 아니라 디스트리뷰터 방식에 의해서도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있었고, 원고회사가 수출자로부터 구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자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이 사건 기술지원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계약의 성격을 살펴보면, 수출자의 기술지원은 쟁점물품의 수리나 교체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수입자가 디스트리뷰터 방식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원고회사는 제품에 첨부된 보증서에 적힌 최소 기간동안 하자보증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수입물품의 수리나 교체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증 서비스라기보다 선교체 후수리 서비스(Advanced Replacement)로써 고객의 사용편의를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지원서비스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계약은, 그 대가의 지급에 있어서 일정기간 별로 수입물품 가격에 대한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 대가가 수입물품가격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나, 원고회사는 최종 사용자들이 요청하는 평균적 범위나 회수를 고려하여 정액으로 받는 이상, 이러한 기술지원의 대가 역시 정액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V. 판결의 요점

통상 산업설비, 자동차, 전기기기와 같은 기술집약형 품목의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는 물품계약과 별도로 하자보증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입자가 지급하는 하자보증금이 과세대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우선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하자보증금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고 수출자가 판매의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보증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면, 하자보증비용은 과세가격의 일부가 된다.

둘째 협정에서는 “하자보증”과 “유지·정비”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데, 유지·정비 비용이라면 수입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처리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자보증은 제조과정 중에 숨겨진 하자를 치유하는 것, 유지·정비는 물품이 그 성능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적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쟁점의 기술지원의 성격이 하자보증인지 유지·정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모호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따른다.

VI. 관세평가의 다른 관점

판결에서는 이 사건 기술지원 비용을 “하자보증”비용이 아니라 “유지·정비”비용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자보증”과 “유지·정비”비용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일편일률적으로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 비용을 하자보증비용이 아니라 관세법 제 30조 3항 2호에 따른 거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고회사가 수출자에게 기술지원서비스 비용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출자가 원고회사에게 다른 구매자보다 추가로 4%의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권 선 아

sakwon@customsservice.co.kr

Trade News

[글로벌 무역 동향]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3차 보고서'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맡고 있는 G20 회원국들의 무역 및 투자 조치에 대한 점검을 목적으로 매 반기별로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해오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무역과 투자부분으로 나뉘며, 다음에서 한국과 관련한 무역 및 무역 관련 조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무역구제조치

조사기간동안('14.10.1-'15.4.30) G20 회원국들의 반덤핑 조사 착수 건수는 115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동안에 개시된 118 건에 비하여 3 건이 줄어 들었다. 반덤핑조사는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화학제품과 플라스틱·고무제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G20 회원국별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

국가	'12.10-'13.4	'13.10-'14.4	'14.10-'15.4
아르헨티나	14	4	5
호주	5	15	12
브라질	18	35	10
캐나다	5	-	1
중국	4	2	3
EU	4	2	6
인도	15	15	28
인도네시아	-	-	6
일본	-	1	-
한국	4	6	2
멕시코	4	2	10
러시아	-	4	2
남아프리카	3	5	-
터키	9	4	16
미국	3	23	14
합계	88	118	115

출처 : WTO 사무국

한국은 조사기간 동안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부분연신사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중국산 침엽수 목재 합판에 대하여 조사개시가 결정되어 예비조사까지 완료되었으며, 조만간 예비판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우리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내린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으며, 현재 양자 협의 단계에 있다.

2.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모든 WTO 회원국들은 새롭게 위생 및 식물위생 (SPS) 조치를 취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상의 통보의무에 따라 나머지 회원국들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신규 조치 통보는 없었으나, 소 해면상뇌증(BSE)과 관련하여 호주, 중국, 일본과 함께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방사능 물질 관련 수산물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WTO 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식물위생(SPS)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 무역기술장벽(TBT) 조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과 마찬가지로 WTO 회원국들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새롭게 실행하거나 변경할 시에 나머지 WTO 회원국들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조사기간 내 실시된 무역기술장벽(TBT) 조치 중 8 건이 신규 현안으로 제기되었는데, 그 중 다른 국가들의 큰 반발을 일으켰던 조치는 중국의 화장품 정보표시 부착과 관련한 행정조치였다.

지난해 말 중국은 2015년 7월부터 화장품 용기에 제품명을 표시하는 라벨의 부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가짜 라벨을 붙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라벨 대신 용기에 아예 제품명 등을 인쇄해야 하므로 수출용 화장품 용기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을 포함한 5 개 국가(한국, 미국, 캐나다, EU, 일본)는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로 현안을 제기하였으며, 중국은 라벨링 부착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제 13 차 보고서는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온 무역제한조치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으며, 다자통상체제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다. G20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조치 도입을 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치도 완화하여 앞날이 불투명한 세계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대리 김 효 선

hskim@customsservice.co.kr

신한 ISSUE

수출입 특수업무 기업 초청 교육
 2015.06.18



ABOUT WRITERS

COVER STORY -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 금융", "무역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FTA News-

한-중미 FTA 협상개시 및 기대효과

Voices From The Fields-

공공사업의 민영화시 고려하여야 할 문제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Case Analysis of

Customs Valuation ② 수입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기술서비스 수수료 과세대상인지 여부

Trade News-

[글로벌 무역 동향]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 13 차 보고서'



신 중 호 관세사
 (jhsin@customsservice.co.kr)



이 동 현 관세사
 (leedh@customsservice.co.kr)



박 소 라 관세사
 (spark@customsservice.co.kr)



유 입 세 관세사
 (isyoo@customsservice.co.kr)



권 선 아 관세사
 (sakwon@customsservice.co.kr)



김 효 선 대리
 (hs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컨설팅 본부 2 팀
-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자문 컨설팅
-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리 컨설팅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컨설팅 본부 2팀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공항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통관 및 환급 전문 컨설턴트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통관 및 환급컨설팅 전문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컨설팅 본부 5팀
- FTA/AEO 컨설팅 전문
- 前 대전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컨설팅 본부 1팀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 원산지관리사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